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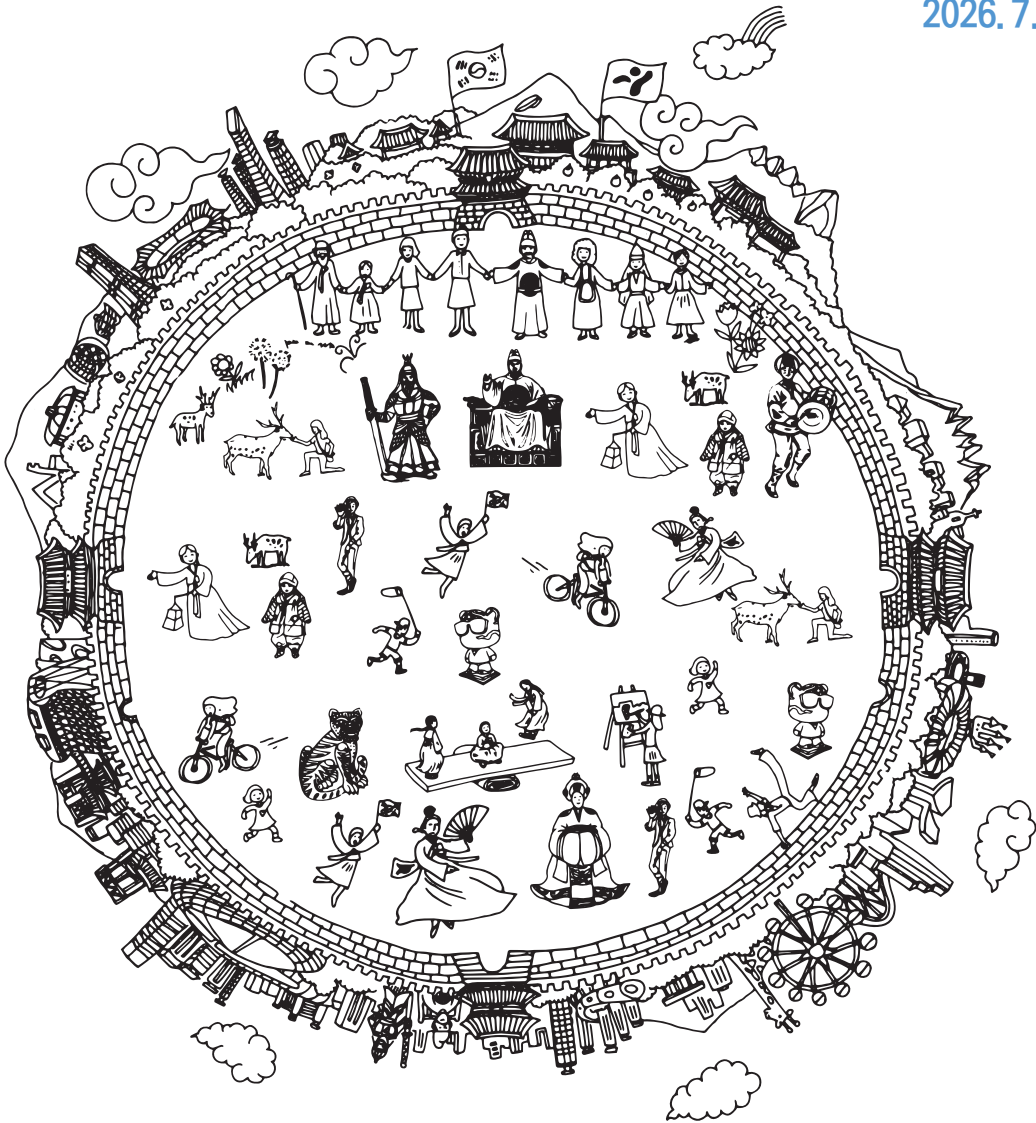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62호
2026. 7. 13.(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10133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1013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10135호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8
제10136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10137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10138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1013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10140호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1014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1014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1014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10144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1014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10146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10147호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	36
제10148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40
제10149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3
제10150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10151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10152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10153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10154호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1015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10156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10157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1015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1015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10160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10161호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1016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1016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	-----------------------------------	----

[규 칙]

제478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1
--------	--	----

제478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4
--------	--	----

[훈 령]

제106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02
--------	--------------------------------	-----

◆ 고 시

제2026-41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4
------------	------------------------------	-----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3호****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이 선임 및” 을 “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를 “이를 행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상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회 조례는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위원 선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하도록 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하거나 폐교된 부지 또는 학교 기능 축소로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해제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한다.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공공필요용도를 설치하는 경우

제4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를 적용한다.

- 가. 상업지역: 500퍼센트
- 나.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 다.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 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 마.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 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도시기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청장이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통보받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조례 제935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폐교 및 이적지 발생이 가속화됨에 따라 학교이적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 추가하여 심의·자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이적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45조제2항)
- 나. 학교이적지 공공 활용 시에 한해 학교이적지 밀도 제한을 예외로 하여 모든(공공, 민간) 학교이적지에 적용토록 하며,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하여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를 학교이적지 밀도(건폐율, 용적률) 제한 예외 규정에서 삭제함(제45조제2항제2호, 제45조제2항제4호 신설, 제49조제3항, 조례 제9351호 부칙 제3조 삭제)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6조제1항제6호 신설)
-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6조제1항제7호 신설)
-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이적지 등재 주체를 구체화함(제6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5호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조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통비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3. 교통비 지원을 받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제3조)
- 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5조)
- 마.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6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 공무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공무원은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직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 반영 및 조향의 현실화(제7조)
- 나.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부여(제29조제20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7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목적과 관계 없는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현행 조례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질서에 관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제10조의2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8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3호나목 중 “산업·경제”를 “산업·경제·일자리·투자”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 간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서울시의 자치구 간 격차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형성된 경로 의존적 결과이다. 한강을 경계로 한 산업·경제 구조의 비대칭성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강 이남(동남권·서남권)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동북권·서북권)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2021년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및 도심중심의 산업·업무 기능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격차에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기반의 마련으로 이른바 '산업생태계'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역별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으로 확대는 서울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셋째, 균형발전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동시에 이미 발전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균형발전계획은 일률적 분배가 아니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이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지역 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역격차 해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투자 분야가 분야별 추진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격차 해소 관점의 우선 고려 원칙 신설(제5조제2항 신설)
- 나. 분야별 추진전략에 일자리·투자 명시(제5조제3항제3호나목)
- 다. 계획 수립 목적 조항의 정비(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서, 훼손지 복구, 완충기능 회복, 부지활용 등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장기 방치 및 훼손 등으로 당초 지정 목적인 생태환경 보전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역세권 주변의 훼손지는 도시 계획적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하여 훼손지 복구, 역세권 연계 개발 등 계획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제17조제1항제9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0호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시하고”를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31일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수목원” 정의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실시를 추가함(제2조제1호).
- 나.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제4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제17호)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4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제11호 신설)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이상”을 각각 “내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6.2.27.) 사항을 고려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위원 위촉위원 수 기준을 현행 “이상” 에서 “내외” 로 변경함(제30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제30조의2제2항제9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6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복지시설의 이용)”을 “(복지시설의 이용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자복지관”을 “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시설의 원상 회복 등을 수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3. 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제6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동자복지시설”을 “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전단 중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을 “(자치구 복지시설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동복지시설”을 “복지시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별표2]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1. 회의실

시설명	면적	기본 이용 시간	금액(원)	비 고
회의실	33㎡이하	2시간	10,000 ~ 15,000	-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 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 로 추가 징수함
	34 ~ 83㎡	2시간	20,000 ~ 30,000	
	84 ~ 165㎡	2시간	30,000 ~ 45,000	
	166 ~ 248㎡	2시간	40,000 ~ 60,000	

2. 강당

명 칭	시설명	기본 이용 시간	금액(원)	비 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관	강당	2시간	80,000 ~ 150,000	-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 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 로 추가 징수함
	소강당	2시간	60,000 ~ 120,000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 복지관	강당	2시간	80,000 ~ 150,000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다목적홀	2시간	40,000 ~ 80,000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노동복지시설 위탁 대상을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이 종료된 복지시설이 포함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
- 또한 조례명과 본문에 ‘노동자복지시설’, ‘노동복지시설’, ‘노동자복지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본문의 경우 조례의 해석 및 집행 과정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
- 이에 노동복지시설 위탁 대상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정비하고, 운영종료 기관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한편, 조례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를 ‘노동복지시설’로 통일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동복지시설 이용제한 사유에 따른 조 제목 변경(제5조)
- 나. 노동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대상 정비(제8조)
- 다. 위탁 취소에 따른 시설관리 조치 신설(제9조)
- 라. 노동복지시설 현행화 및 이용료 정비(별표 1, 2)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7호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청년들의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청년대회”란 2027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청년대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청년대회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청년대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5. 교통·숙박·급식·의료·관광 등 대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계청년대회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3.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숙박·급식 등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문화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개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치구,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세계청년대회 지원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 관련 부서와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과의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숙박·시설, 급식, 안전, 위생의료, 교통, 문화관광, 행정 지원 등 분야별 관련 부서·기관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단에 분야별 추진 지원을 위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숙박·급식 지원) ① 시장은 시 내 숙박 및 급식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 교육청, 자치구,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세계청년대회 참가자 숙소 및 급식시설의 확보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교육청, 자치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에게 안전한 대규모 급식 공급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교육청, 자치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숙박시설과 해당 시설 주변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시설 또는 해당 시설 주변에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식수대 등 적정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행사장 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세계청년대회 행사장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집결과 해산 시 행사장의 안정적인 인파 관리를 통해 세계청년대회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시장은 행사장 또는 행사장 주변에 화장실, 식수대, 무더위쉼터 등 적정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통 지원) ①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행사장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 편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② 시장은 행사장 주변의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관리 대응책을 마련한다.

제12조(안전 및 위생의료 지원) ① 시장은 대규모 인파 운집 및 치안 관련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 및 행사장 주변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폭염·폭우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의료체계를 마련한다.

제13조(문화·관광 지원)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에게 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및 관광 안내를 통해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한다.

제15조(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단체 활동 지원)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청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시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7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세계청년대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3조 및 제5조)
- 나. 시장이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질서유지, 환경정비, 교통·숙박·급식 등 편의 지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홍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다.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 및 지원단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라. 숙박·급식, 행사장, 교통, 안전 및 위생의료, 문화·관광, 자원봉사자, 대회 관련 시설, 청년단체 활동, 홍보 및 안내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9조~제17조)
- 마.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8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6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국내에서 서울특별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역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2. 교통·통신·전력·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정비 및 관계기관 협조 지원
3.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
5.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6.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6조(민간 참여 활성화)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임사무의 처리)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국가·타 지자체·민간과의 협력 강화, 조직위원회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함(제3조).
- 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타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함(제4조).
- 라. 행사장 및 기반시설 제공, 도시경관 조성,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안전·의료 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함(제5조).
- 마. 시민 참여 고취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9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계·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생노동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1부시장

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실·국장급 공무원

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출자·출연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전통시장,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온라인유통 등 업종별 단체 대표

다. 소상공인 정책, 경제, 경영, 노동, 유통,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정책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개최)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공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단체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을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전문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분야

2. 외식산업 분야

3. 온라인유통 및 디지털전환 분야

4. 창업 및 경영혁신 분야

5.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

6.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를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존속기한) 협의회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로 하고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삭제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 협력 증진과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협의회의 간사, 회의 개최, 의안 제출 및 안건 배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8조)
- 라. 전문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 마.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및 실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제12조)
- 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관련 규정을 삭제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0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국제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및 교통비 부담 증가 등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후동행카드 및 대중교통 지원 정책 확대와 맞물려 시민 이동패턴이 변화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파업, 재난 등 운행 차질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수요 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외부 요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을 규정함(제19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1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 사항
2.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제출한 인근 지역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와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4. 시장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사항
6. 그밖에 주민협의체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차기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상임위원회 보고)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풍납토성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을 구체화하고 주민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납토성 보존·관리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풍납토성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구체화함(제5조)
- 나.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2)
-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2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조직화, 구역설정 검토·조정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2025년부터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조직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을 위한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조직화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3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4호 중 “발급대상자”를 “발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단, 임산부 애플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애플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50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배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
(제5조의2제3항제4호, 별표 3)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4호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술 창작물의 무단 학습·활용 등 예술인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가 예술인 보호차원에서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제3조제5항)
- 나.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함.(제5조제1항제4호)
- 다. 시장이 각종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도시관리의 연속성 강화 및 체계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2항 신설)
- 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존 조항을 명확화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함(제21조제1항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6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곤돌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9.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한 차례”를 “1회”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간사를 둘 수 있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남산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보완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정책의 공유와 책임성을 높이고 곤돌라 시설의 이용 제한 근거와 이용료 감면 규정 마련, 남산발전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 나. 곤돌라 시설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이용 제한 근거 마련 및 이용 제한의 기준·대상·절차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등록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하고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제12조제2항 및 3항)
- 라. 남산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표현을 “한 차례” 에서 “1회” 로 정비함(제16조제4항).
- 마. 남산발전위원회 간사 및 회의록 규정 정비, 그 외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에 위임(제18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7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

③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행규칙”을 각각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사무가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3조의3)
- 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3항제3호)
- 다.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 예술진흥”을 “문화예술 진흥”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공연예술진흥”을 “공연예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예술진흥”을 “문화예술 진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사장이”를 “상임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임이사 (이하 “사장”이라 한다)”를 “사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3명”을 “사람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시의”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면하고자”를 “임명하고자”로 한다.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17조제3항 중 “법인에 대하여”를 “법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추천위원회 구성 명확화 및 법적안정성 등 강화를 위해 해당 조례 추천위원회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 아래와 같이 개정(제9조제1항)

-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
- 나. 띄어쓰기 및 자구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5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 공무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시대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 발생 시 자기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특별휴가 신설

2. 주요내용

- 가. 공직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 반영 및 조항 현실화(제6조)
- 나. 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부여(제24조제19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60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청소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족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제한 규정 삭제 (제7조제1항제6호)
- 나. 재혼가정 자녀 순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제7조제1항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61호**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주택임대차”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주택임대차”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호 중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을 “통지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신청자가”를 “신청인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청인·피신청인·분쟁관련”을 “신청인·피신청인·분쟁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내보여야 하며”를 “내보여야 하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서正本”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으로, “송달”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7일”을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로, “서면 등으로 알리지”를 “서면으로 표시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제11호”를 “영 제33조제2항제1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인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 구체화함(제3조제5호)
- 나. 조정절차 개시시기에 관한 규정인 ‘조정신청을 송달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유선·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를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함(제9조제3항)
- 다. 각하대상에 관한 규정인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변경함(제10조제5호)
- 라. 조정성립에 관한 규정인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로 변경함(제15조제1항~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6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이라” 를 ““운영” 이라” 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자” 를 “하는 자” 로 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 중 “잔디보호” 를 “잔디 보호” 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허가시” 를 각각 “사용허가 시” 로 한다.

제10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제10조제2호마목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에 대하여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 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 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 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 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 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 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 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 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 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 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 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창동문화 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 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서울어울림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8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수영장	수영	
	다목적실	생활체육	
	볼링장	볼링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돍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돍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돍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돍구장 체력단련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4,000~8,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 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관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돍구장 수영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육센터	성 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볼링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볼링장	성 인	3,500~7,000(1게임, 1레인)
		청소년	2,500~5,000(“)
		어린이	
비 고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2수영장	성 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골프연습장	성 인	40,000~60,000					
	청소년	30,000~50,000					
올림픽 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1,200	15,000 ~22,500	22,500 ~33,700	30,000 ~45,000	33,700 ~50,500	36,700 ~55,000
	청소년	5,600 ~8,400	11,200 ~16,800	16,800 ~25,200	22,400 ~33,600	25,200 ~37,800	27,400 ~41,100
	어린이	4,700 ~7,000	9,400 ~14,100	14,100 ~21,100	18,800 ~28,200	21,100 ~31,600	22,900 ~34,3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나. 서남권 돛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북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 ~ 109,5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 ~ 109,500	
초·중·고반(주 3회)	88,000 ~ 132,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 ~ 21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 ~ 109,500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 23,100	30,800 ~ 46,200	46,200 ~ 69,300	61,600 ~ 92,400	69,300 ~ 103,900	75,400 ~ 113,100
	청소년	8,800 ~ 13,200	17,600 ~ 26,400	26,400 ~ 39,600	35,200 ~ 52,800	39,600 ~ 59,400	43,100 ~ 64,600
	어린이	8,200 ~ 12,300	16,400 ~ 24,600	24,600 ~ 36,900	32,800 ~ 49,200	36,900 ~ 55,300	40,100 ~ 60,100
체력단련장		44,000 ~ 66,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마. 장충체육관

(단위: 원)

시설	수 강 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바. 산악문화체육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 강 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사.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력 단련장		44,000 ~ 66,000					
수영장	성 인	19,000 ~26,000	38,000 ~53,000	57,000 ~80,000	76,000 ~106,000	85,000 ~119,000	92,000 ~129,000
	청소년	13,000 ~17,000	26,000 ~34,000	39,000 ~52,000	52,000 ~69,000	58,000 ~77,000	63,000 ~84,000
	어린이	12,000 ~16,000	24,000 ~32,000	36,000 ~48,000	48,000 ~54,000	54,000 ~72,000	58,000 ~78,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한다.						

아.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강료를 산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2 수영장	09:00~18: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00~12: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00~18: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아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301,600	350,000~455,000	560,000~728,000
		2시간	93,000~120,900	140,000~182,000	224,000~291,2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113,800
		A2			77,800~101,100
		A3			63,400~82,400
		A4			61,800~80,300
		A5			45,600~59,200
서남권 돛구장	아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221,000	256,000~332,800	409,000~531,700
		2시간	68,000~88,400	102,000~132,600	163,000~211,900
	아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110,000~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철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121,000~173,000	173,000~181,000	224,900~423,000	
	수영장	09:00~18:00	586,000~635,700	882,000~955,500	1,130,000~1,224,600	
		09:00~12:00	195,000~211,900	294,000~318,500	376,000~408,200	
		12:00~18:00	495,000~536,900	745,000~807,300	979,000~1,060,800	
	다목적실	3시간	12,000~15,600	31,000~40,600	37,000~48,400	
	볼링장	1시간, 2레인	28,000~40,000	30,000~42,000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초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초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초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대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로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립체육시설의 대상에 따라 감면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호라목).
- 나.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추가함(제16조제2항)
- 다.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추가함 (별표 1)
- 라.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개인사용료 및 전용사용료 금액의 범위를 신설함(별표 2 및 별표 3)
- 마.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6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단체” 를 “청소년단체 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청소년단체” 를 “청소년단체 등”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종량구	시립종량청소년센터	"	용마산로 217
		시립망우청소년센터	"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 660-9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	남부순환로54길 37
	③ 유스호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서남)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북)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중랑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	시루봉로 15길 93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운영총괄	월드컵로 212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광진사무소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강서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	"	우장산로 117
	중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중부사무소	"	창경궁로1길 14
	동작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보라매사무소	"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사무소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상담 및 운영총괄	영선로 200
	은평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사무소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통일로 62길 7
	광진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사무소	"	구천면로 2
	양천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사무소	"	남부순환로 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사무소	"	여의대방로 20길 23-1
	도봉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사무소	"	노해로69길 132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립청소년시설 명칭·위치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법령 정합성 확보(제2조 및 제10조)

- 상위법령에는 청소년시설 위탁단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대상 범위 확대

나. 청소년시설의 명칭·위치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 개정)

- 성문화센터 및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통합 반영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주소 현행화
(기존) 성북구 한천로 95길 → (변경) 성북구 한천로 660-9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8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별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칭의 명칭,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칭의 사용으로 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성격·기능 등에 관하여 시민에게 다른 인식을 유발할 경우가 있는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시설 건립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조직) 청소년시설의 조직·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관리요소 정비를 통한 행정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 ‘시립청소년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 별칭 사용의 기준·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시설 별칭 사용 관리체계 신설(제2조)

- 1) 시설의 공식 명칭 외 별칭 사용 증가에 따라 공공성 및 시민 혼선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나. 운영상 관리요소 정비(제7조~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 1) 「근로기준법」, 「채용절차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불필요한 조문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 서울특별시규칙 제478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에 대하여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2. 11. 3.>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강충체육관, 강충체육관내 보조체육관, 창동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4,000	
아구장	잠실아구장, 목동아구장, 서남권돔구장	4,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서남권 돔구장	4,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4,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인	5,000
		청소년	3,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8,000
		18홀	15,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제조관	잠실제조관	3,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4,000 (1시간)
		청소년	2,800 (1시간)
		어린이	2,500 (1시간)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 (1시간)
		청소년	2,000 (1시간)
		어린이	1,500 (1시간)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4,800

			(1시간)
		청소년	3,300 (1시간)
		어린이	3,000 (1시간)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
		청소년	3,500
		어린이	3,000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험센터	성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볼링장	서울아울림체육센터 볼링장	성인	3,500 (1게임, 1레인)
		청소년	2,500 (1게임, 1레인)
		어린이	
비고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2수영장	성 인	21,000	40,000	60,000	75,000	85,000	95,000
	청소년	12,000	24,000	35,000	42,000	50,000	55,000
	어린이	9,000	18,000	24,000	32,000	40,000	44,000
체력단련장		45,000					
골프연습장	성 인	50,000					
	청소년	40,000					
올림픽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5,000	22,500	30,000	33,700	36,700
	청소년	5,600	11,200	16,800	22,400	25,200	27,400
	어린이	4,700	9,400	14,100	18,800	21,100	22,9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나.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4,000	28,000	42,000	56,000	63,000	68,600
	청소년	8,000	16,000	24,000	32,000	36,000	39,200
	어린이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29,400
체력단련장	44,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	
초·중·고반(주 3회)	88,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35,000	48,400	61,600	69,300	75,400
	청소년	8,800	17,600	34,000	35,200	39,600	43,100
	어린이	8,200	16,400	30,000	32,800	36,900	40,100
체력단련장	44,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마. 장충체육관

시 설	수강료
다목적실1	100,000
다목적실2	100,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비 고
클라이밍장	성 인	36,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	
	어린이	30,000	

사.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력단련장		45,000					
수영장	성 인	19,000	38,000	57,000	76,000	86,000	92,000
	청소년	13,000	26,000	39,000	52,000	58,000	54,000
	어린이	12,000	24,000	36,000	48,000	54,000	58,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한다.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3,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개정 2023. 12. 29.>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	181,000	423,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	110,000	244,000	
	제1·2 수영장	09:00-18:00	804,000	1,206,000	1,548,000
		09:00-12:00	268,000	402,000	516,000
		12:00-18:00	680,000	1,020,000	1,341,000
	야구장	221,000	331,000	530,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	774,000	1,252,0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	222,000	355,000	
	체조관	41,000	62,000	138,0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			
	풋살구장(2시간)	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	857,000	1,267,0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	350,000	560,000
		2시간	93,000	140,000	224,0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위밍업실(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광장(4시간, m ² 당)	21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 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A2			77,800
		A3			63,400
		A4			61,800
		A5			45,600
서남권 돔구장	야 구 장	224,000	336,000	538,000	
	축구장	1일	155,000	232,000	372,000
		2시간	51,000	77,000	
	수영장	09:00 - 18:00	489,000	735,000	942,000
		09:00 - 12:00	163,000	245,000	314,000
		12:00 - 18:00	413,000	621,000	816,000
	보행광장 (4시간, m ²)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볼펜 (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	256,000	409,000	
		2시간	68,000	102,000	163,000	
	야구장	1일	111,000	167,000	466,000	
		3시간	66,000	100,000		
	실내빙상장		102,000 (1시간)	153,000 (1시간)	7,331,000	110,000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1면, 2시간) 89,0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	187,000	300,000	
		2시간	50,000	74,000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129,000	193,000	451,0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	60,000	79,800	
	다목적실(3시간)		12,000	31,200	37,2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창동문화체육 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	173,000	224,900	
산악문화체육 센터	기획전시실		158,000			
	다목적실		352,000			
	시청각실		232,0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			
서울어울림 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21,000	173,000	224,900	
	수영장	09:00 - 18:00	586,000	882,000	1,130,000	
		09:00 - 12:00	195,000	294,000	376,000	
		12:00 - 18:00	495,000	745,000	979,000	
	다목적실	3시간	12,000	31,000	37,000	
	볼링장	1시간, 2레인	28,000	30,000		
비 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7.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의 개인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금액을 신설함(제3조 별표 1, 별표 2)
- 나.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6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조례제27조”를 “조례 제27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단, 1년 단위는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1. 감사·조사·감시·참관 연 2회 이하 참여한 경우

2. 위원회 주관 간담회·연수회 등 연 2회 이하 참석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1년 단위 참석대상 위원회 주관 간담회·연수회 등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2.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및 활동기준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대한 규정 구체화·명확화(제25조제2항, 제3항)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1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324('74.9.24./최초결정)호, 제472('86.10.23.)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71('21.12.9.)호, 제2023-65('23.2.23.)호, 제2023-369('23.8.24.)호, 제2024-203호('24.4.18.)호, 제2024-346('24.7.11.)호, 제2024-422호('24.8.29.)호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23-65('23.2.23.)호, 제2023-369('23.8.24.)호, 제2024-203호('24.4.18.)호, 제2026-246호('26.4.28.)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02-2133-8250)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도록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면 적 : 268,584.5㎡ 중 공공영역 : 158,657.4㎡
* 공작물 설치 부지 면적 : 33,297.92㎡ (주경기장)
 - 규 모 : 지하4층/지상3층, 연면적 195,634.43㎡

구분	규모	비고
주경기장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00,034.33㎡	공작물 축조 변경
보조경기장	지상2층, 연면적 875.56㎡	변경없음
학생체육관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25,731.70㎡	변경없음

구분	규모	비고
체육시설동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6,217.76㎡	변경없음
업무시설동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42,775.08㎡	변경없음

○ 공작물 축조 조서(주경기장 내)

• 당초

1)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구분	종류	명칭	구조	높이(m)	길이(m)	수량	면적(㎡)	건폐율(%)
1	옹벽	RC옹벽	RC구조	3	14.3	-	-	-
2	기타	웬스(그물망)	강구조	3	66	-	-	-
3	기타	웬스(그물망)	강구조	9	36	-	-	-
4	기타	웬스(그물망)	강구조	16	38	-	-	-
5	담장	외야담장	PC구조	3	179	-	-	-
6	기타	파울폴대	강구조	28	-	2	-	-
7	통신용철탑	스피커폴대	강구조	16.5	-	2	-	-
8	기타	조명타워	강구조	35	-	2	-	-
9	기타	타자시아보호벽 (국기게양대포함)	철골조(타자시아보호벽) /강구조(국기게양대)	21	19.9	1	-	-

2) 공작물 축조 신고 비대상

구분	종류	명칭	구조	높이(m)	길이(m)	수량	면적(㎡)	건폐율(%)
10	-	필드공사	-	-	-	-	약 13,700	-
11	-	덕아웃	-	-	-	2	316	-
12	-	신규관람석 & 볼펜	-	-	-	2	1,240	-

• 변경

1)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구분	종류	명칭	구조	높이(m)	길이(m)	수량	면적(㎡)	건폐율(%)	비고
1	기타	웬스B(그물망)	철골구조	9	15.5	2	-	-	-
2	옹벽	RC옹벽	콘크리트구조	3	13.5	2	-	-	공작물축조 신고완료 (신고처리일 '26.6.8.)
3	기타	파울폴대	철골구조	28	-	2	-	-	
4	담장	외아담장	콘크리트구조	3	179	-	-	-	
5	통신용철탑	스피커폴대	철골구조	16.5	-	2	-	-	
6	기타	조명타워	철골구조	35	-	2	-	-	
7	기타	타자시아보호벽 (국기계양대포함)	철골구조(타자시아보호벽) /강구조(국기계양대)	21	19.9	1	-	-	

2) 공작물 축조 신고 비대상

구분	종류	명칭	구조	높이(m)	길이(m)	수량	면적(㎡)	건폐율(%)
8	-	필드공사	-	-	-	-	약 13,700	-
9	-	덕아웃	-	-	-	2	약 336	-
10	-	신규관람석 & 볼펜	-	-	-	2	약 1,240	-
11	-	웬스A(그물망)	강구조	3	66	2		-
12	-	와이어(그물망)	-	16	73	1		-
13	-	신설보행로(남/북)	철골구조	(4.7/4.6)	122/124	2	-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현대자동차(주) 외 2개사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착공예정일: 2023년 8월
- 준공예정일: 2026년 12월
- ※ 대체야구장 조성 : 2026.5. 착공, 2026.12. 준공(임시사용승인)

• 변경

○ 착공예정일: 2023년 8월

○ 준공예정일: 2027년 2월

※ 대체육구장 조성 : 2026.5. 착공, 2027.2. 준공(임시사용승인)

6.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변경없음)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체육시설	운동장	잠실동 10번지 일원	268,584.5	-	268,584.5	1974.9.24 (건고시 제324호)	중로1-86, 철도(2호선 정거장) 중복결정

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세부시설의 면적(구역계획)

구분	구역	구분	건물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체육시설 집적구역	①	주경기장	202,051.7	-	202,051.7	실제 체육시설이 건축물로 유지·관리되는 구역
			보조경기장				
			학생체육관1)				
			데크시설				
			수영장				
			스포츠컴플렉스				
		②	야구장	66,532.8	-	66,532.8	
합계				268,584.5	-	268,584.5	-

주1) 서울시 교육청 소유의 학생체육관은 이전·신축하는 사항으로 토지는 동일면적으로 상호이관(교환) 하며, 신축 건물 준공 후 기존 학생체육관 철거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임.

나) 건축물에 대한 배치계획 및 건축물 용도

구역	구분	번호	건물명		건물용도	건축면적(㎡)	지상층연면적(㎡)	건축물 높이
체육 시설 집적 구역	①	1	주경기장		운동경기장	33,297.92	76,869.44	3(1)층
		2	보조경기장		운동경기장	-	875.56	2층
		3	학생체육관1)		운동경기장	10,395.52	4,193.00	2(4)층
		4	데크 시설	체육시설	실내훈련장	11,844.48	8,348.43	2(1)층
				업무시설	업무·편의시설	9,141.19	4,662.75	1(4)층
		5	수영장		운동경기장	11,175.00	3,856.59	1(4)층
	6	스포츠콤플렉스		운동경기장	16,726.60	18,629.87	2(4)층	
	②	7	야구장		운동경기장	37,810.61	122,285.79	75.8m
합 계						130,391.32	239,721.43	-

※ 기존 사설물 면적은 「교역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보고서 및 건축물대장 면적이며, 주경기장 리모델링 영역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학생체육관, 데크시설)의 경우 리모델링 실시설계 건축개요 면적임.

주1) 서울시 교육청 소유의 학생체육관은 이전·신축하는 사항으로 토지는 동일면적으로 상호이관(교환) 하며, 신축 건물 준공 후 기존 학생체육관 철거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임

3)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

가) 건축면적의 합계 (건폐율 계획)

구역	구분	구역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비고
				법정건폐율	계획건폐율	관리건폐율	
체육시설 집적구역	①	202,051.70	92,580.71	60% 이하	45.82%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제1종일반주거지역
	②	66,532.80	37,810.61	60% 이하	56.83%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준주거지역
합 계		268,584.50	130,391.32	-	48.55%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용적률 계획)

구역	구분	구역면적(㎡)	지상층 연면적(㎡)	용적률			비고
				법정용적률	계획용적률	관리용적률	
체육시설 집적구역	①	202,051.70	117,435.64	150% 이하	58.12%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제1종일반주거지역
	②	66,532.80	122,285.79	400% 이하	183.80%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준주거지역
합 계		268,584.50	239,721.43	-	89.25%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다) 건축물 높이계획

구역	구분	계획높이	관리높이	비고
체육시설 집적구역	①	지상3층 ~ 지하4층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제1종일반주거지역
	②	75.8m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준주거지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전체	공공영역		
1	송파구 잠실동	4	도	13,951.5	4,934.6	4,934.6	서울특별시	-
2	송파구 잠실동	6	제	20,531.7	19,933.1	8,880.0	서울특별시	-
3	송파구 잠실동	7	제	4,691.7	3,235.2	-	서울특별시	-
4	송파구 잠실동	9	도	12,691.9	6,306.5	5,474.7	서울특별시	-
5	송파구 잠실동	10	체	135,861.2	11,6704.1	92,192.8	서울특별시	-
6	송파구 잠실동	10-1	체	212,361.7	117,471.0	47,175.3	서울특별시	-
계		총 6필지		400,089.7	268,584.5	158,657.4	-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50)로 문의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